

—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5년 9월 15일

라. 상정일자 : 2005년 9월 23일

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행정지원국장 이 재 응

나. 제안이유

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2년간 공시지가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 부담을 완화 하고자 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2005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 그 상승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50을 경감한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함(안 제32조의2 신설)

라. 참고사항

경상북도 재정과-14971(2005. 8. 19) 시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